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3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변경사항 행정예고

1. 변경 이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4.19.~5.31.)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변경 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안 제5조제1항제2호)

- 1) 외부감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100억원” 미만에서 “120억원” 미만으로 변경

- 2) 외부감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사원 수” 기준을 신설(유한회사에 한정)
- 3)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

3.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93, 팩스: 02-2100-2678, 이메일: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p>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p> <p>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p>	<p>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p> <p>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u></p> <p>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p> <p>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p> <p>가. <u>일용근로자</u></p> <p>나. <u>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u></p> <p>다. 「<u>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파</p>	<p><u><삭 제></u></p> <p><u>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수가 100명 미만인 회사</u></p>

현 행	개 정 안
<p><u>견근로자</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마. <u>사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u> (<u>유한회사에 한정한다</u>)</p> <p>② <u>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u> <u>거나 합병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u> <u>한 경우에 제1조제2호 각 목 외의</u> <u>단서 부분에 해당하는 회사로 본</u> <u>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에는 제1</u> <u>항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u> <u>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직</u> <u>전 사업연도 말”은 “설립등기를 하</u> <u>였을 때”로 본다)를 말한다.</u></p> <p>③ <u>제1항제2호 및 제2항에도 불구</u> <u>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u> <u>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4</u> <u>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u> <u>회사”로 본다.</u></p> <p>1. <u>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u> <u>500억원 이상인 회사</u></p> <p>2. <u>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u> <u>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u> <u>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로 환산</u> <u>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u> <u>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3조제1항, 제5조, 제9조제2항(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나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 제11조 제4항, 제15조,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p> <p>제7조(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5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5조제1항마목이 용되지 아니한다.</p>